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4의4] <개정 2022. 6. 30.>

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(제55조의2제1항 관련)

1. 긴급회수문의 크기

가. 일반일간신문 게재용: 5단 10센티미터 이상

나.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: 긴급 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절 가능

2. 긴급 회수문의 내용

위해축산물 긴급회수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:

나. 제조일·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:

※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적을 것

다. 회수사유:

라. 회수방법:

마. 회수 영업자:

바. 영업자 주소:

사. 연락처:

아. 그 밖의 사항: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
○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